
무배당 FUTURE BALANCE 변액유니버설보험
약관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32
<< 주요내용 요약서 >>	35
<< 보험용어해설 >>	37
무배당 FUTURE BALANCE 변액유니버설보험 약관	40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0
제1조 【목적】	40
제2조 【용어의 정의】	40
제2관 보험금의 지급	43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43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3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3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43
제7조 【보험금의 청구】	44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44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44
제10조 【주소변경통지】	45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45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45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45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45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45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46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6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46
제17조 【청약의 철회】	46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47
제19조 【계약의 무효】	48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48

제21조 【보험나이 등】	49
제22조 【계약의 소멸】	49
제23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49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9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49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50
제26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51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52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52
제29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53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53
제3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53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53
제3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54
제33조 【해지환급금】	54
제34조 【보험계약대출】	54
제35조 【배당금의 지급】	54
제36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55
제7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55
제37조 【계약자 적립금의 계산】	55
제38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56
제39조 【펀드의 유형】	56
제40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60
제41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60
제42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61
제43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61
제44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1
제45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62
제46조 【특별계정의 폐지】	63
제47조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	63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63
제48조 【분쟁의 조정】	63
제49조 【관할법원】	63
제50조 【소멸시효】	63
제51조 【약관의 해석】	63

제5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64
제5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64
제54조 【개인정보보호】	64
제55조 【준거법】	64
제5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64
 제9관 연금전환특칙	 64
제57조 【특칙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64
제58조 【특칙의 보험금의 청구】	65
제59조 【특칙의 보험금의 지급절차】	65
제60조 【특칙의 체결 및 소멸】	65
제61조 【특칙의 피보험자의 범위】	65
제62조 【특칙의 보험기간】	65
제63조 【특칙의 보험료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65
제6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66
제65조 【특칙의 해지환급금】	66
제66조 【특칙의 공시이율 적용 및 공시】	66
제67조 【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66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67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68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69
(별표 4) 연금지급기준표.....	70
(별표 5) 특칙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72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저축성상품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적립금에 적용 되는 투자실적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투자실적,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규모, 중도인출 및 월대체보험료* 미납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 월대체보험료는 본문 설명을 통해 반드시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유니버설보험

- 회사가 정한 기간(동상품의 경우 12년(의무납입기간))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납입 기간 중 선택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최대 3년까지 납입 일시 중지가 가능합니다(본문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참조)
- 그러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활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 암보장개시일” 및 “ 갑상선암보장개시일” 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 CI보장개시일” 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갱신형 특약 관련

-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최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형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시의 나이 증가,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특약은 보험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되며,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거나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가 되는 계약해당일을 초과하는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특약의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변액보험

-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 체결, 관리 비용(사업비)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용됩니다.

○ 수술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 입원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상해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품설명서 본문의 ‘실제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암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 이내에 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예: 180일, 1년, 2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특정질병

- 암,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출혈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CI

- CI보험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 계약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5.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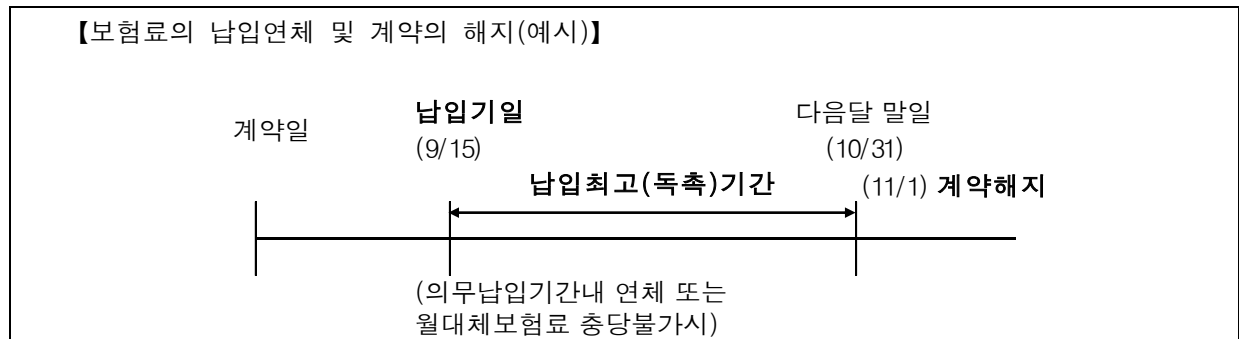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후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라 함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동안은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용어해설 >>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 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

○ **특별계정**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립운용)의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

○ **일반계정**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립운용)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 **펀드**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 자산

○ **펀드적립금**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으로 펀드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

○ **특별계정적립금**

계약자가 선택한 각 펀드적립금의 합계

○ **계약자적립금**

특별계정적립금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의 합계

○ **특별계정투입보험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해진 부가 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투자를 목적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각 펀드에 투자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위험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월계약해당일마다 특별계정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비용

○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약관 본문에 정의된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운용보수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 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무배당 FUTURE BALANCE 변액유니버설보험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② 기타 이 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계정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4.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34조(보험계약대출)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함)을 “계약자적립금”에 포함하며,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금】

계약자 적립금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일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월계약해당일”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한달 씩 지나게 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7. “기본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 주계약보험료를 말합니다.
8. “약정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9.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약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료로서 해당월의 약정보험료가 납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및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

- 1회 납입 가능한 수시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 총액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수시 및 월 추가납입보험료 포함)의 합계

나. 월추가납입보험료 : 매월 약정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

다만, 매월 납입하는 월추가납입보험료는 매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 수시추가납입보험료(다만, 제1회 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는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제외)는 제1회 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후부터 납입 가능합니다.

10. “위험보험료”라 함은 주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11. “월대체보험료”라 함은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납입시 부과하는 계약관리비용 제외)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과된 경우에는 특약의 영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는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납입시 부과하는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예) 계약일: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매월 20일

→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 이 보험은 매월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되므로 의무납입기간(12년(144회 납입))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 미납입, 과도한 중도인출로 주계약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또는 의무납입기간 중 납입중지기간(최대 누적 36개월)동안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12.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서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제13호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3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3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13.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14.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5.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가.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나.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다.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라.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16. “의무납입기간”이라 함은 계약일 이후 매월 납입기일(“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항 참조)에 약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말하며, 12년(144회 납입)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늘어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사망보험금이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 제12호에서 정한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2조(계약의 소멸)의 ‘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27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에서 미공제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 의료기관’ 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3(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 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임.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

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실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감액
2. 보험가입금액 감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비율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3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최저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직후의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text{감액 직전의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직전의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는 해당 감액 이전에 감액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 또는 제3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3항에 따라 계산된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를 말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감액은 기본보험료의 감액으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별 기본보험료의 최저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보험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⑦ 제1항 제1호의 경우의 변경된 사항은 추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 ⑧ 제1항 제2호의 경우의 변경된 사항은 익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 ⑨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⑩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2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3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단,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 납입, 의무납입기간) 까지는 계약체결 시 정한 약정보험료를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월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약정보험료와 월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동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2년(144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총당할 수 있으면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특약에도 동일하게 납입일시중지가 적용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약정보험료 의무납입기간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및 납입완료시점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기되지 않으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특약보험료는 주보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되는 특약보험료는 주보험 계약자적립액에 투입(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되어 적립됩니다.
- ⑤ 납입일시중지기간은 1회 신청당 최대 36개월(다만, 신청 전에 누적된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36개월에서 제외 한다)을 최고 한도로, 1회 신청시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 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동조 제8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약정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⑥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약정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

약자는 매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월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계약자가 신청한 납입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의 납입기일까지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 제11호의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합니다.

⑨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26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제43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의 제1항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말하며 이하 “기준가격”이라 합니다)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7년이후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기본보험료의 5.0%를 더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로 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③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계약이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까지는 표준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약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에는 보험료 납입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가. “납입기일 - 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납입기일”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 약정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납입기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납입기일 + 제1영업일”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 약정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 + 제1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이체금액은 약정보험료에서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추가납입보험료 및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의 약정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발생일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이체 되기 전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제1회 보험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7조(청약의 철회) 제3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납입된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 납입일” 부터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까지는 표준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체결 후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제1항에서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라 함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 납입일시종지기간” 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종지기간 만큼 늘어납니다) 동안은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내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 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약정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실효된 경우
의무납입기간까지는 연체된 약정보험료 이상의 금액,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납입시 부과하는 계약관리비용 이상의 금액
2.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실효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납입시 부과하는 계약관리비용 이상의 금액

- ③ 제2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 청약 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 상당액(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 시까지 가산이자 포함)과 제2항의 금액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부가사업비(납입시 부과하는 계약관리비용 포함) 및 특약보험료 차감)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⑤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⑥ 제4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제2항의 금액이 납입된 경우 “ 제2항의 금액 납입일+ 제2영업일”
 2. 제2항의 금액이 납입된 후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 ⑦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제29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3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3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3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및 제30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및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④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4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별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 - 1.5%”로 적립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상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2영업일”까지 제2영업일 동안 표준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함과 동시에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⑤ 보험계약대출금액은 펀드별 계약자적립금비율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기본보험료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⑥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36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금액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년도】

당해년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 직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발생 전에 감액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 또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예1)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적립금 ≠ 해지환급금)

적립금 1,200만원, 해지환급금 1,000만원, 가입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70만원

→ 해지환급금인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인출 후 적립금이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2배인 840만원 이상 남아 있어야 함으로 360만원까지 인출 가능

예2) 계약일로부터 7년 이후인 경우(적립금 =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적립금) 1,200만원, 가입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70만원

→ 해지환급금인 1,200만원의 50%는 600만원이나, 인출 후 적립금이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2배인 840만원 이상 남아 있어야 함으로 360만원까지 인출 가능

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7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37조 【계약자 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위험보험료, 사업비(납입시 부과하는 계약관리비용 제외),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를 포함) 및

중도인출금액(중도인출수수료 포함)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 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차감합니다.

제38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 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 가” 항 또는 “ 나” 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제39조 【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MMF형 펀드: 단기 우량채권, MMF(집합투자기구(펀드)), 유동성자산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유동성 및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국·공채권, 통화안정증권, CD, 콜론, MMF 등	100%

2. 채권형 펀드: 채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국·공채권,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회사채(A- 이상), 유동성 자산 등	100%

3. 글로벌채권형 펀드: 글로벌채권형 펀드 등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글로벌채권 관련 펀드 등	95% 이내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5% 이상

4. 글로벌인컴 펀드: 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집합투자기구)에 80% 이내로 투자하고, 국내 채권, 단기금융상품, 유동성 자산 등에 2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국내 채권뿐 아니라 해외 채권 및 우량 주식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해외 투자 (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펀드)등)	80% 이내
국·공채권, 통화안정증권, 유동성 자산 등	20% 이상

5. 인덱스주식형 펀드: KOSPI200 주식 등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

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KOSPI200 주식 등	95% 이내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5% 이상

6. 글로벌이머징마켓주식형 펀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고 국내 주식 등에도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분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수익성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해외 주식 및 주식 관련 해외 펀드 등	70% 이내
국내 주식	30% 이내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5% 이상

7. EMEA주식형 펀드: EMEA(이머징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펀드 등에 95% 이내로 투자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EMEA(이머징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펀드 등	95% 이내
CD, CP 및 콜론 등 유동성 자산 등	5% 이상

8. 중소형주식형 펀드: 국내 우량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중형주 위주의 투자로 펀드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제고하는 투자전략을 가진 펀드로서, 95%이내의 자산을 해당 주식 또는 집합투자기구에(펀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국내 투자 (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펀드)등)	95% 이내
단기금융상품, 유동성 자산, 현금 등	5% 이상

9. 배당주식형 펀드: 고배당주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 하고 배당수익을 포함한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저평가된 우량 종목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자본이익을 실현하고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안정적 risk/return profile을 추구하는 운용전략을 가진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국내 투자 (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펀드)등)	95% 이내
단기금융상품, 유동성 자산, 현금 등	5% 이상

10. 미국주식형 펀드: 미국주식형 펀드는 S&P500 지수에 연동된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전략을 가진 펀드로서, 미국 주요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시장가치 변화를 통해 미국 경제 전반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미국주식, 미국주식형수익증권, 미국주식형ETF 등	95% 이내
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11. 유로주식형 펀드: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기업 주식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	-------

유럽연합 국가 기업의 주식 또는 동지역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주식형 ETF 등	95% 이내
국내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12. 인컴앤그로스 펀드: 미국 또는 캐나다 등 선진국에 소재한 발행자의 주식과 같은 지분성 상품(equity instruments), 고수익채권, 전환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 정기적인 이자수입을 달성하는 투자목표를 가지고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선진국 주식, 선진국 고수익채권 또는 전환사채,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13. 글로벌배분 펀드: 총투자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세계의 모든 주식, 채권, 단기증권에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전세계의 주식, 채권, 단기증권,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14. 월드주식형 펀드: 전세계 주식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산출할 수 있는 투자목표를 가지고 전세계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지수(MSCI All Country World Index 등)를 상회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전세계주식,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15. 미국중소형주식형 펀드: 장기적 자본성장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의 주요 거래소나 시장에서 매매 되는 중소형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미국주식(중소형회사),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16. 미국인컴주식형 펀드: 평균수준이상의 실질 수익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가치상승을 통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펀드로 평균이상의 배당수익을 주고 장기적으로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의 중대형 중심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미국(또는 북미) 기업의 주식, 단기채권,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17. 유로채권형 펀드: 주로 유로 지역의 국공채 및 공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에 따라 추가 수익을 위해 옵션전략을 수행할 수도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유로지역의 국공채, 공사채, 우량회사채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18. 글로벌물가연동채권형 펀드: 실질 자본 보전과 신중한 투자관리를 통해 실질 수익의 극대화 추구를 투자목표로 하는 펀드. 대부분의 자산을 전세계에서 발행된 채권 또는 인플레이션을 보전할 수 있게 구조화된 인플레이션에 연계된 채권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전세계의 국공채, 공사채, 우량회사채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19. 미국고수익채권형 펀드: 미국 또는 미국 외 발행자의 투자등급 또는 낮은 등급의 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이자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미국, 미국 외 발행자의 채권, 채권관련지수, 채권관련파생상품,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20. 미국채권형 펀드: 미국 또는 미국 외 발행자의 다양한 고정이자 포트폴리오(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이자수익과 자산가치 보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미국, 미국 외 발행자의 채권, 채권관련지수, 채권관련파생상품, 또는 동일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21. 자산배분펀드 안정추구형: 해외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의 하위 펀드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투자 대상 자산, 지역, 섹터에 대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찾고자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전세계의 주식, 채권, 참조 지수 또는 기타 자산,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22. 자산배분펀드 중립형: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하위 펀드 포트폴리오를 통해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고, 투자 대상 자산, 지역, 섹터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추구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전세계의 주식, 채권, 참조 지수 또는 기타 자산,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23. 자산배분펀드 적극형: 해외 주식 등 투자수익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에 초점을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대상 자산, 지역, 섹터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추구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구성 비율
전세계의 주식, 채권, 참조 지수 또는 기타 자산, 펀드, ETF 등	95% 이내
국내외단기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② 회사는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③ 제 1항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가입한 계약자도 신규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39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를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의 수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펀드를 합하여 최대 7개이고, 이는 납입보험료 투입비율 변경이나 펀드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펀드를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각각 펀드별 투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선택한 펀드 유형별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투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에 투입되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최저 투입비율은 각 보험료 납입액의 10%이상이어야 하며, 1%단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은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릅니다.

④ 특별계정투입보험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⑤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각각에 해당하는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⑥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에 의한 펀드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변경요구일 +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⑧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등으로 인한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현금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이 경우 해당 자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4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제41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 체결시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② 계약자가 제40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5항에 따라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됩니다.

③ 계약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계약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2회 이내의 범위내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펀드자동재배분】

펀드자동재배분이라함은 일정 주기마다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편입비율로 재배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주기 펀드자동재배분 A펀드 50% + B펀드 50%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6개월마다 A펀드와 B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은 1:1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제42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43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 ①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전일 종가(마감가격)기준)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특별계정 총 좌수}}{\text{특별계정 순자산가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 자금이체시 적용하는 각 펀드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에 정해진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합니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제26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제3항에서 정하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2.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상환일 + 제2영업일”
3.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4. 계약자 신청에 의한 중도인출금,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신청일 + 제2영업일”
5.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소멸 또는 해지일” (다만,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
6.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는 경우 “ 계약해당일”
7.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날”

제44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8 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⑥ (생략)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제45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특별계정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순자산가치가 50억 미만인 경우
 3. 특별계정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순자산가치가 50억 미만인 경우
 4.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 사유, 폐지 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40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47조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제4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1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54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5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9관 연금전환특칙

제57조 【특칙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이 특칙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는 경우에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별표 4 “연금지급기준표” 참조)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은 특칙 전환 당시의 피보험자의 나이와, 주계약(전환전계약) 가입당시의 이 특칙의 약관 및 보험요율(최저보증이율, 연금사망률, 사업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8조 【특칙의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연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9조 【특칙의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8조(특칙의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57조(특칙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특칙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60조 【특칙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칙은 주된 보험계약의 체결 후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 계약자는 이 특칙을 활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전환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연금전환시 연금개시 이전까지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
	(보증지급기간:10년/20년)	체증형(5%/10%, 10년간 체증)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10년/15년/20년)		정액형
		체증형(5%/10%, 10년간 체증)
상속연금형		

③ 제57조(특칙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제61조(특칙의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칙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1조 【특칙의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칙의 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특칙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이 특칙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 【특칙의 보험기간】

이 특칙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이고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까지입니다.

제63조 【특칙의 보험료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칙의 보험료는 연금지급개시일에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전환일시금)으로 합니다.

② 이 특칙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 및 계약해당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칙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특칙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칙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65조(특칙의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특칙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65조 【특칙의 해지환급금】

- 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66조(특칙의 공시이율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제66조 【특칙의 공시이율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칙의 연금 및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칙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연복리 1.0%를 최저 한도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제67조 【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적립액의 인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약관 제3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 적립금

- (주) 1. “계약자적립금”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사망보험금이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 제12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 법적 개입 ” 중 법적 처형(Y35.5)
- ③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안은 제6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3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33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33조 제3항)	「청구일 + 제2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50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 4) 연금지급기준표

□ 연금(제57조 제1항)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종신 연금형	보증 기간부	특칙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년도 또는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보증 금액부	특칙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특칙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확정연금형		특칙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상속연금형		특칙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주) 1.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2.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과 확정연금형에서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15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 과 “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6.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일시납보험료(전환일시금)라 함은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 특칙으로 납입(전환)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5) 특칙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59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연금 (제5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이후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공시이율 + 1.5%)
해지환급금 (제6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공시이율 + 1.5%)

- (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전환전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제50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